

# 2025년도 울산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참여기업 4차(상시) 모집 공고

2025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는 “2025년 울산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울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울산지역산업진흥원장

## 1. 지원개요

- (사업명) 울산 자유무역지역 기업지원사업
- (지원규모) 총 약 1.9억원(국비 1.9억원)
  - 지원개사 : 10개사 내외, 지원금 : 프로그램별 상이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 이상
- (지원기간) 협약일 ~ 2025. 10.
- (지원방법) 참여기업 선정 후 직접지원

## 2. 지원대상(신청기업)

- (지원자격) 닥터FTZ 수혜기업 중 울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 참여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닥터FTZ를 신청 후 매칭 진단 후 기업지원사업 진행

- (신청자격 요건)

구 분		신청자격 요건
공통	1	• 「지역중소기업법」 상의 지역중소기업 (중소기업 <sup>1)</sup>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sup>2)</sup>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2	• 사업장소재지가 울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
조건	1	• 국비 지원금액 대비 최소 10% 이상 기업부담금 매칭 * 해외유턴기업, 신규가동기업('25년),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최소 5% 이상
	2	• 기존 경쟁력 강화사업 직전 5개년('20~'24년)도 지원금액 합이 5억원 미만

○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업이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사업에서 정하는 신청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의 조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 3. 세부 지원내용

○ (지원프로그램 및 지원항목) 총 4개

구분	세부 프로그램	지원규모	지원개사
닥터 FTZ	기술, 공정, 조직, 재무상태 컨설팅 및 기업경쟁력 진단	최대 5회 (전액 무료)	00개사
↓ ※ 닥터 FTZ 컨설팅 후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업 참여기업 선정			
사업화지원	시제품제작 지원	최대 20,000천원	1개사 내외
	시험인증 지원	최대 10,000천원	2개사 내외
	기업진단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최대 10,000천원	4개사 내외
	글로벌 경쟁력 컨설팅 (제조공정고도화)	최대 10,000천원	3개사 내외
※ 기업부담금은 지원규모의 최소 10%가 매칭되어야 함(예외사항 2.지원대상 확인) ※ 사업화·종합 지원을 신청을 위해서는 닥터 FTZ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			

○ (지원프로그램 상세내용)

구분	프로그램	지원항목	비고
사업화 지원	시제품제작	○ 지원 내용 - 양산 이전의 성능 개선.검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 - 연구개발이 완료된 기술 및 제품의 상품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기존 또는 신규 고객 대상 제품 공급을 위한 Sales용 샘플 제작 - 개발 제품의 수요기업 필드테스트를 위한 샘플 제작 - 전시회 및 수요기업 대상 홍보용 샘플 제작 ○ 사업비 불인정 항목 - 단순 완제품 양산, 양산형 금형 등 자산성 물품 제작·비용 - 단순 원재료 구입 비용	
	인증획득	· 지원내용 - 시제품의 성능 평가를 위한 인증/평가 시험분석 지원 - 국내외 제품인증 및 인증마크 획득 지원 - 성능.안전성 검증 시험성적서 취득 및 인증획득 지원 - 공인인증 시험비용, 인증신청비, 심사비 등 지원	
	기업진단 및 기술사업화 컨설팅	○ 지원내용 - 사업화 유망기업 컨설팅 진행 - 수혜기업 요구에 맞는 전문가 매칭 - 기술사업화 제안(기획)서 도출	
	글로벌경쟁력 컨설팅 (제조공정 고도화)	○ 지원내용 - 전문가(닥터FTZ 및 전문가그룹)를 연계하여 해당 생산공정의 정확한 진단을 통한 지원 - 생산공정고도화, 로봇자동화시스템(공정3D 시뮬레이션 제공), ESG공정 구축방안	
공통	○ 사업비 불인정 공통 항목 - VAT - 임차료,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사무기기 - 자산성 물품 구입비, 연구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 단순 경비(출장비, 식대, 인건비, 공공요금 등) - 상품성.단발성(일회성 판매용)·판매용 제품 제작 비용 - 사업비 변경, 이월 등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 - 참여기업의 역할이 불확실한 용역비(ex. 3자 위탁개발 등) - 단순 자금 지원, 단순 원자재 조달, 영업활동을 위한 사업비 - 증빙서류가 미비한 사업비 - 그 외 기타 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		

**4. 평가방법 및 기준(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 평가진행)**

-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제재기업여부 및 NTIS) → 선정평가(발표(서면) 평가)→현장실태조사(필요시)

○ (평가항목) 평가 상세 내역 및 배점에 대하여 기재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필요성(20)	- 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의 명확성
	- 지원대상의 사양, 현 진행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등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20)	- 추진계획 및 목표달성의 구체성
	- 국내외 기술(제품)과의 차별성
타당성(20)	- 지원내용, 범위, 일정의 구체성
	- 지원금액의 적정성
기대효과(30)	- 지원제품(기술)의 사업화(개선을 통한 자동화, 생산성 향상) 가능성
	- 매출 및 고용 창출 가능성
기타(10)	- 사업비 운영 적정성
	- 사업 활동계획의 적정성

○ (선정기준)

구 분	평가 종합평점 산출방법	선정기준
발표(서면) 평가	- 평가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하되, 가점 및 감점을 포함하여 계산함 - 최고 또는 최저점수 중 같은 점수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그 중 하나를 제외하고 계산함	- 평가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기업부터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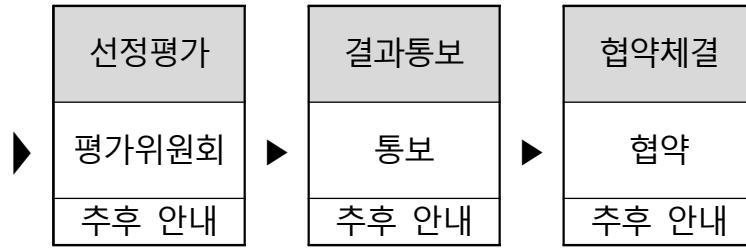
※ 평가위원회 기타 제반사항(평가위원, 선정, 평가기준, 평가표작성)은 울산지역산업진흥원에서 일괄 진행

## 5. 추진일정

○ 신청서접수 : 2025년 8월 6일(수) ~ 상시(예산 소진시 까지)

○ 선정평가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6.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5. 8. 6.(수) ~ 상시
- (접수기간) 2025. 8. 6.(수) ~ 상시(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울산TP 홈페이지 '지원사업공고'에서 확인 및 신청 가능
  - (신청·접수처) <http://platform.utp.or.kr>
    - ※ 접수 전 회원가입 사전 진행 필수

##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서식 여부	비고
1	닥터FTZ 참여신청서(기업용)	별첨1	
2	참여기업 사업신청서(직인 날인본)	서식1	
3	제출서류 목록표	서식2	
4	신청자격 자가진단 확인서	서식3	
5	신청기업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4	
6	정부지원사업 이력 상세확인서	서식5	
7	사업자등록증	-	
8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지사) 또는 공장등록증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 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서 사본 ※ 사업장의 울산 소재 여부 확인을 위함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울산인 경우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	해당시	
9	2022년 ~ 2024년 국세청 제출 재무제표 ※ 전년도 결산 미완료 혹은 재무제표 발급이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제출	-	
10	2022년 ~ 2024년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연도별 개별 발급 필수 (검색기준 설정 : 매년/12/31 ~ 매년/12/31 (※연말 기준 고용인원 확인을 위함))	-	
11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사업 공고 시작일 이후 발급본	-	
12	거래처(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8.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주제)로 기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중복지원을 한 경우, 선정평가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또는 선정 이후라도 지원기업 협약해약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음
- (신청자격 요건)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 과제신청서를 토대로 신청자격 및 가점사항 등을 서면 검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지원금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협약일 이전 발생한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9.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각 사업별 지침 및 관련 법령, 울산테크노파크 지원사업관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사업과 관련된 문제로, 형사 또는 민사로 소추된 경우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예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
  1.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연구개발비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를 제한한다

## 10. 이의신청

### ○ 이의신청의 범위

- (이의신청 가능 사항)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된 경우, 과제 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명백한 행정 오류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이의신청<sup>아</sup> 가능

- (이의신청 불가 사항) 선정결과 통보, 평가위원 선정, 사업비 결정, 평가규정 및 절차, 평가방식(서류/발표/현장) 등에 이의가 있는 때

### ○ 이의신청 방법(재단 지원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는 경우)

- (신청기한)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5일 :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 (제출서류) [별첨2. 이의신청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기업지원단 지역기업지원실로 이메일 등 수신방법 기재(neofill@utp.or.kr)을 통

하여 제출

- (작성방법) 신청기업(기관) 혹은 신청자 명의의 공문과 신청인 인적사항, 통보일, 평가결과, 이의신청 사유 등을 명확하게 이의신청서에 적어 이의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
- (유의사항)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평가, 대면평가 등 과제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1회만 가능

## 11. 관련법규(※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자유무역지역 지원사업 운영지침 및 성과평가 관리지침
-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동운영요령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운영요령

## 12. 문의처

구분	담당자	소속	연락처	이메일
사업문의	유홍구	울산테크노파크	052-219-8641	neofill@utp.or.kr
	전상봉	울산지역산업진흥원	052-248-5768	jsb@riia.or.kr